

2026년도 「안전일터 조성지원(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관리품목(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공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안전일터 조성지원(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중 관리품목(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관리품목 : 공단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

2.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장의 사업주(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 제외,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종코드 90515)는 가능)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제출서류④)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제출서류⑤)

3. 참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참여 제한>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④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⑥ 당해연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결정 사업장(단, 신속지원 결정사업장은 참여 가능)
- ⑦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2회 이상 결정 받은 사업장(단, 신속지원 결정사업장은 참여 가능)
- ⑧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4. 지원내용

-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 전동지게차 신청 시 타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 병행 신청 가능, 전동지게차 단일 품목은 1천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부가세 미지원

- ▶ 각각 최대1,000만원 추가 지원 ①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한함), ②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③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④고위험업종*(6개업종),
 - * ①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섬유제품제조업(20209), ④자동차부분품제조업(21846), ⑤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⑥화학비료제조업(20903)

-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부가세 미지원)
-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사업장 당 1대)
 - * 전동지게차에는 스마트 충돌방지장치 또는 자동서행정지장치 중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함
 - 품목 지원한도,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 성능기준은 세부내용 참조별첨1
- **(지원절차)**



5.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예산) 130억원
- (신청기간) '26. 6. 12.(금) 15:00 ~ 6. 30.(화)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에 사업자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 온라인 신청 매뉴얼: portal.kosha.or.kr >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 안전일터 조성지원(스마트 안전장비) > 자료실
 - ※ 투자설비 입력 시 지게차 모델과 ①충돌방지장치 또는 ②자동서행 및 정지장치 모델 각각 분리하여 전산 입력(①,② 중 필수 선택)
 -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사업자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 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 (신청문의)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별첨2 참조)
-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참여사업장 이용 동의」 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가 서명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 품목별 최소 성능기준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 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제출 서류	비고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른 가격결정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세부 구성, 구성품 모델, 수량 등이 명시된 자료 포함(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 지원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④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해당시 (첨부1)
⑤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 50인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해당시 (첨부1)
⑥ 1천만원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고용증가 근로자수, 위험성평가 인정)	해당시

⑦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첨부3)
⑧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	(첨부4)
⑨ 품목별 최소성능기준(별첨1)상의 각종 인증서, 시험성적서 사본 ※ AI 기능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제출	
⑩ 보조·용자금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6)
⑪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7)
⑫ 기존 지게차 보유 증빙 서류(건설기계등록증 또는 지게차 보유 사진 또는 지자체 신고 증빙 서류(등록세, 취득세 등) 또는 용량·모델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매매계약서 등)	해당시

<세부사항>

- 표준가격(기준가격)이라 함은 공단이 실거래 세금계산서, 시장가격조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미리정한 금액
- ③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⑦의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에 기재한 위험요인과 개선대책 등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시 중요하게 활용됨
- ⑫ **한정적인 결과 지게차 실제 보유대수가 다른 경우 우선선정점수 재산정을 통해 보조금 산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투자계획과 동일하게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제출서류(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포함)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지게차는 법적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완료 시까지 설치하여야 함 (미설치 시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헤드가드, 백레스트, 좌석 안전띠, 전조등 및 후미등,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또는 후방감지기)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투자완료 확인요청)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에 확인 요청**

제출 서류	비고
① 입금 통장 사본 각 1부	
②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각 1부	
③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각 1부 - 온라인 구매 시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구매내역 (포함내용: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방법)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	
⑥ 보조금지급 위임장 1부	해당시
⑦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용)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하여야 함	(첨부5)
⑧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 서명)	(첨부8)
⑨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	(첨부9)
⑩ 지급보증보험증권	(첨부10)
⑪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첨부11)

<세부사항>

- ④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⑩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보조결정금액 이상) 제출[첨부10 참조]
- ⑪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제작·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장에 제공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장은 공단에 사본을 제출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 ①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 ①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7. 선금급 (신청 시)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 품목 구입·설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선금급 제도 시행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선금급 신청양식*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지급 가능
- * 온라인 신청 시 선금급 신청 여부에 사전 체크한 경우는 생략 가능
- ** 선금급 신청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첨부10] 참고

8.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형법 제347조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 환수(최대 5배)가 발생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추가 환수	참여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예시)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5배	5년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3년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 포함)	2배	3년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3년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3. 참여제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별첨2] 문의처 참고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객센터 > 관할소개 > 지역별 문의처 참고
-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사용매뉴얼)** 제작·판매업체는 스마트 안전장비 기능, 사용방법, A/S 조치사항, A/S 연락처 등이 포함된 사용매뉴얼을 구매 사업장에 제공 및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 교육·안내하여야 하며, 구매 사업장은 해당 장비를 지속 유지·관리·사용하여야 함
 - ※ 투자완료 시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 작성 및 제출
- **(품질보증)** 사후관리기간 동안 A/S가 유지토록 지원품목은 품질 보증기간*(3년) 의무가 확보되어야 함
 - * 1년 무상, 2년 유상(제품의 본질적 문제는 제작·판매업체 부담 조건)
- **(명판부착)** 기본적인 제반정보*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기재하여 부착
 - * 필수정보: 제품명(모델명 포함), 일련번호, 제조년월, 제작업체명, 판매업체명(연락처)
 - ※ 스티커, 종이 및 그 밖에 쉽게 파손·변형·지워지는 재질(방법)로의 부착은 불가하며,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
- **(관련법령·규정)**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제109조의2(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5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규칙 제1170호)을 따름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자 함

* 중기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

Q.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①규모기준과 ②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기준” 내용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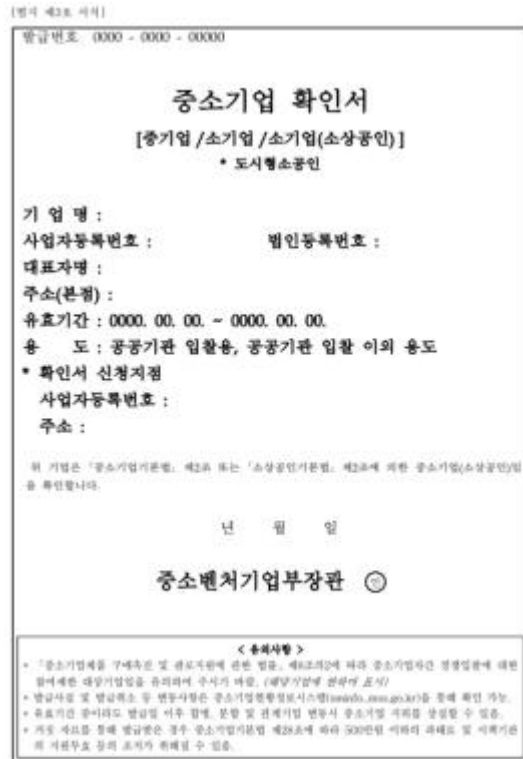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일반상담(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1811-6508



■ 확인사항 중

① 신청사업장이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

* 중기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

②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참고)

첨부 2

'26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선정기준

※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

① 특별재난지역(산불 등의 피해지역) 내 피해사업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항목		항목별 가점치	비고				
■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		최대 80점					
① 노동부 점검·감독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30점	점검·감독대상 통보 증빙자료 제출				
② 사고사망 위험업종		최대 10점	'25년 공식통계 기준 소업종 단위 배점				
구분	사고사망만인율						
	10백수	5~10백수	2~5백수	1~2백수	0.5~1백수		
배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②-1 지게차 부딪힘 사고발생 상위 5개 업종 -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91001), 구역화물운수업(50106), 사업서비스업(90104), 육상화물취급업(50010), 자동차부분품제조업(21846)		5점	※ 근로복지공단 산재업종에 따라 부여				
③ 최근 3년간('23~'25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최대 10점	'23~'25년 공식통계 기준				
구분	3년			2년	1년		
배점	10점	7점	3점				
④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사업장(위험도 기준)		최대 10점	※ 선정일 기준 저위험도 - 공단 빅데이터 활용 고위험 - 사업장 예측 결과 활용 ※ 위험도 정도에 따른 점수부여 - 저위험군(0.0~0.5미만) - 중위험군(0.5~0.9미만) - 고위험군(0.9~1.0)				
구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배점	10점	7점	3점				
⑤ 사업장 규모별 점수부여		최대 5점	최근 공식통계 상사근로자수 기준				
구분	10인미만			10인~29인미만	30인~50인미만		
배점	1점	3점	5점				
⑥ 최초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 결정 사업장		5점	결정 이력 기준 (결정 후 취소된 건 불인정)				
⑦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최대 5점	※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괄 부여				
구분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						
	80% 이상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0% 초과 20%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		최대 20점					
⑧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		15점	신청일 기준 인정 유효기간 내				
⑨ 아래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한 사업장 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사업장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사업장(1회 이상 컨설팅 받은 사업장) ③ 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후 인정 참여 사업장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사업장에 점수 부여		5점	'25년 1.1. ~ 신청일 기준				
■ 가점 항목		(가점) 25점					
⑩ 정부 혁신, 신기술 인증제품 ※ 인정범위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신기술(NT) 신제품(NP) 인증 제품 환경부 혁신제품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등		6점	확인서, 인증서 사본 등 신청 시 제출				
⑪ 중·소벤처기업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산업안전분야 구축사업 대상 사업장		5점	확인서, 인증서 사본 등 신청 시 제출				
⑫ 고용위기 지역('26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2점					
⑬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①노사문화 우수기업 ②강소기업 ③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④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선정기업 ⑤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⑥일자리 으뜸기업 ⑦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⑧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⑨산학협력 우수기업(인증) ⑩성평등가족부에서 인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		2점	우수항목 중복시에도 최대2점으로 한정 ※ 대상 명단이 없는 경우, 인증(정)서 제출 시에 한함 ※ 인증기간 내에 한하여 가점 부여				
⑭ 기존 지게차 보유 대수		최대 5점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매매계약서 또는 지게차 보유 사진 등 제출 (4페이지 참조)				
구분	4대 이상			2대~3대	1대		
배점	5점	3점	1점				
⑮ 자동서행 및 정지장치 신청 시		5점					
계		최대 125점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①→②→③→④→⑤→⑥→⑦)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사업장명	00 가공 산업	평가일시	26. 6. 1.	작성자	김안전
작업공정 (작업내용)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위험성 결정	개 선 대 책	
재로 입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게차운행 중 과적재에 따른 전도 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계획서 작성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전도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상시 과적재와 전도여부를 운전자에게 알려 예방하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 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계획서 작성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구획 구분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충돌예방장치가 장착된 지게차를 신규 도입하여 노동자 충돌 위험 재해 등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철판)이 적재불량으로 무너져 근로자 깔림 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재대 및 고정장치설치하여 적재 적재 주변을 고려하여 구획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태 유지 	
절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 절단기 수리·점검 중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근로자 절단 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TO 실시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노동자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 절단기 주변에 관계자 외 사람이 출입하여 끼임 등 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표지(출입금지) 부착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기타 재해 등 예방 	
용 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보수·기타 확인을 위해 산업용로봇 근처로 가는 중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충돌 위험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TO 실시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노동자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접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해 화재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표지 부착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기타 재해 등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용 로봇 충전부 노출 부분에 접촉하여 감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전부에 절연덮개 설치 - 덮개 제거하여 작업시 작업계획서 관리감독자 배치 - 주회 충전부 노출여부 순회점검 안전보건표지 부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태 유지 	
적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장크레인으로 가공 철판을 옮기는 도중 근로자와 충돌 및 자재에 깔림 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계획서 작성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AI) 크레인충돌예방장치를 설치하여 충돌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된 철판을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 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계획서 작성 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구획 구분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충돌 위험을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 예방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위험성평가 결과서로 대체 가능

보조·용자금 중복지원 금지 약속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지원사업,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용자지원

1. 본인은 공단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보조금(용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용자지원을 결정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추후라도 공단으로부터 보조·용자지원을 결정받은 품목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용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용자금 환수(추가환수 최대 5배), 사업참여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3.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보조·용자지원 결정받은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에 보조·용자 지원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단으로부터 보조·용자지원 결정받은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 서약자

- 사업장명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주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작·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련 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지급 사업주는 지급요청에 앞서 제작·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은 적이 없으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련 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

순번	확인내용	확인결과
1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지원이 취소 및 환수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지원목적 부적합 사용 등 예시: 미사용, 일부 기능이 고장난 상태로 사용, 고장상태 방치 등 ※ 지원목적 부적합 사용 등 확인 시 지급받은 금액 및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 발생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보조·지원이 취소 및 환수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부적정 예시: 안전장치 임의해제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상기 1, 2번에 따른 보조·지원의 취소 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추가 환수 금액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후관리기간이 3년이고, 공단에서 연 1회 이상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를 실시함을 알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 설명서(매뉴얼)을 제공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사용 교육을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최소성능기준 상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고장 등 문제 발생 시 연락 및 조치 방법을 제공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A/S 기간 및 범위 등에 대해 안내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A/S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귀사는 '하자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구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 시 하자보증보험 발급 의무 대상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귀사는 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을 통해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가 사후관리기간(3년) 동안 산업재해예방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라 보조·지원의 취소,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사업장

사업주:

(서명)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
 -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신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결정통보일로부터 4년 5개월
- ※ (예시1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9.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예시2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1.2.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5개월)
-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투자완료확인 요청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계 [REDACTED]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REDACTED]	피보험자	122-82-04898 안전보건공단
보험가입금액	[REDACTED] W [REDACTED]	보험료	☐ 일시납 ☐ 분납
보험기간	2026년 9월 19일부터 2030년 9월 18일 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REDACTED] 계약기간 [REDACTED] 계약체결일자 [REDACTED] 계약금액 [REDACTED]		
	2026년 9월 19일부터 2030년 9월 18일 까지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으로 적용
 - ※ 예시)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6.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 경우
 ☞ '26.6.16. + 3년 2개월 => '26.6.16. ~ '29.8.15.
 -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이고 '26.6.2.에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26.6.2.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6.6.2. ~ '29.8.1.
-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같음가능)
-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계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 일시납 □ 분납
보험기간	2026년 6월 16일부터 2029년 8월 15일 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어음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담보기간 계약세금일자 계약금액 보증금율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color: red; font-weight: bol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2026년 6월 16일부터 2029년 8월 15일 까지</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color: red; font-weight: bol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30%</div>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금(최대 5배)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

[부정수급 시 환수금액 예시]

1. 보조지원금액 : 3천만원

2. 총 환수금액 : 최대 1억8천만원 [보조지원금액(3천만원) + 추가환수금(최대 1억5천만원)]

※ 추가환수금 : ①허위·거짓 부정 신청(지급받은금액 × 5배)

②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 등(지급받은금액 × 2배)

구분	주요 사례
(허위·거짓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②소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등 자격요건 관련 서류 허위 제출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대상 근로자, 발급일 등) 허위 제출 ④기존 설비를 신규 투자설비로 속이고 신청한 경우(선투자 포함) ⑤기타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관련 서류 허위 제출 등
(가격결정 자료 허위제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결정 근거자료를 허위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허위 제출 - 상품설명서,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 허위 제출 등
(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지원설비를 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지원 설비를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 대상임 ※ 사업장 이사 등으로 설비 이동이 불가할 경우도 환수 대상에 포함
(폐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을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장 폐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경영악화 등에 따른 폐업도 환수 대상임 ※ 보조지원 대상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상속자가 폐업하거나 임의 매각하는 경우도 환수 대상임
(투자완료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완료 이후 설비 모델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기능상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비 모델 변경 불가 ○ 투자완료 다음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완료 이후 세금계산서 취소·재발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투자금액 일치여부 확인(정당한 사유없이 불일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별첨 1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 성능 기준



- (지원목적) 차량계 스마트 안전장치가 설치된 전동지게차를 일체 지원하여, 지게차 도입 예정사업장의 근본적인 **끼임·부딪힘** 등을 예방
- (품목설명) 무선, ICT,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인체감지 충돌 예방장치**가 설치된 전동지게차로서 충돌 위험 시 경보장치로 위험을 알리거나, 경보 후 자동서행·정지기능 부착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3톤미만 전동지게차(입식·좌식)를 도입하려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수 제한 : 사업장 당 1대(‘23년 이후 보조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 중고품 지원불가 2. 전동지게차는 고용노동부 고시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지게차에 관한 사항(제179조~제183조)에 따라야 함 3. 투자완료시, 다음 둘 중 하나의 관련 자격서류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 조종 이수증 4. 투자완료시, 지게차 지자체 신고(취득세) 서류 제출 5.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충돌방지장치 또는 자동서행·정지장치(작업자 태그방식 제외)를 부착한 3톤미만 전동지게차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분	최소 성능기준
충돌방지장치	<p>■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이 표시되고, 충돌 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 2. 경보장치는 작동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음량을 갖출 것 3.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될 것 4.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일 것 5.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 이어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표준협회(AI+ 인증),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스마트 안전기술 인증) ** 시험성적서의 경우 인체 감지 성능을 반드시 포함하고, 정밀도, 재현율 기준 각각 90% 이상이어야 함 6. KC전파인증서 제출 <p>[카메라 및 감지장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전·후방 사각지대 예방, 영상분석 시스템 기반 정확한 인체감지(최소 4대 이상 설치) 8. 최소 1m 이상 거리에서 근접하는 작업자(인체)를 감지 및 경보 기능을 갖출 것 9.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p>자동서행 및 정지장치 (센서형)</p>	<p>■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이 표시되고, 충돌 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 2. 경보장치는 작동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음량을 갖출 것 3.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될 것 4.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일 것 5.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 이어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표준협회(AI+ 인증),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스마트 안전기술 인증) ** 시험성적서의 경우 인체 감지 성능을 반드시 포함하고, 정밀도, 재현율 기준 각각 90% 이상이어야 함 6. KC전파인증서 제출 <p>[카메라 및 감지장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전·후방 사각지대 예방, 영상분석 시스템 기반 정확한 인체감지(최소 4대 이상 설치) 8. 최소 1m 이상 거리에서 근접하는 작업자(인체)를 감지 및 경보 후 자동서행·정지 기능을 갖출 것 9.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p>전동지게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동식으로 타이어가 솔리드방식 - 적재하중이 3톤 미만 2. 전동지게차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크상승높이 300mm 이상으로 주행시 경보음이 울려야 함 (그 이하의 높이에도 울리는 경우에 지원 가능) - 전동지게차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어야 함 : 좌석 안전띠,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낙하방지밸브

별첨 2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및 담당자 연락처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966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23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40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17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33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08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27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055-269-0545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55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24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063-240-8542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061-288-8742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42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26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35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053-609-0557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36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053-650-6839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48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26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43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42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22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620-5657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27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36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45
경기광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59-7175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22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23
경기남부지사	경기도(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690-1934